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26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조정식 · 이해식 · 박상혁
이성윤 · 곽상언 · 김영호
윤후덕 · 안태준 · 김윤덕
백선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는 벌금형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영구적으로 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 타법의 결격사유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호 중 “벌금형”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제10조의3 중 “제10조의2제6호”를 “제10조의2제5호 또는 제6호”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 다.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u>	5. <u>300만원 이상의 벌금형</u> ---- ----- ----- -----
6. <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6.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u> ----- ----- ----- ----- -----
<u><신 설></u>	<u>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u>
<u><신 설></u>	<u>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u>
<u><신 설></u>	<u>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u>

<u>7.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u> <u>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u> <u>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u> 제10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u>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u> <u>7.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u> <u>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u> <u>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u> <u>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u> 제10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u>제10조의2제6호</u>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 다.	----- <u>제10조의2제5호 또는 제6호</u>--- ----- ----- ----- --.
---	--